# 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 3 )**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제조(343000)	비정기	3조원대	지방청

# Text I 조사성과(결과)

####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을 OEM(주문자생산)방식으로 완성차 업체에 Text 공급하는 제조회사로 '9X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Text - 대전·울산 등 국내 생산기지와 중국·유럽 등 00개의 해외현지법인을

Text 보유하고 있으며, 대전·독일·체코에 R&D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Text 나. 적출성과

####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I	연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임원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익금 누락 (수익항목 누락)	10104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임원 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손해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2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 (기타 국조법 관련 과세)	18106	제3자 거래처의 평균회수기일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여 정상이자분 익금산입
	3)	해외현지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기타 국조법 관련 과세)	18106	조사법인의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는 해외현지법인 중 2개 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4)	해외현지법인 공동경비 청구 누락 (공동경비 분담금액 초과)	11203	조시법인의 컨설팅 비용 중 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청구 누락

# Text Ⅱ 조사노하우

Special



❖ 수익항목 누락 (항목코드: 10104)

임원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익금 누락

####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어른보도)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법인 임원 AAA씨의 00억원대 배임 Text 사건이 발생했고 조사법인이 관련 임원을 고소한 사실을 확인

Text < 네이버 뉴스 >

able	, 억원대배임혐의로前임원고소
	일력 202년
	은 전직 임원 김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은 김 씨기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 Text 나. 형사사건 자료 수집

- Text 즉시 배임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사건이 조사대상기간 내 Text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 Text (사건개요) 조사법인은 대전에 소재한 기숙사를 임원 AAA의 배우자가 Text 설립한 법인에 매각한 후 임차(sale & lease back)하여 사용중
  - Text (배임혐의 고소) 내부고발로 부정사실을 포착하여 내부감사 진행,
    Text 임원 AAA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민사 고소
  - Text <mark>- (재산적 손실 발생)</mark> 조사법인은 저가매각액, 임대료 과다지급액, Text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총 ○○억원 상당의 재산적 손실 발생
  - Text (자료 수집)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 기숙사 매매 계약서, 임대차 Text 계약서, 감정평가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등 자료 수집

Text 가. 조사법인 주장에 대한 검토

Text ( **소사법인 주장**) 조사법인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Text 기본통칙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Table 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Text ( ) (과세사례 검토)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예규 및 과세 Text 사례 검토 결과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귀속 시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다수임을 확인

Text - 다만, 예규 및 과세사례의 대부분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Text 따라 배상액의 변동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방안 재검토

Table 판례 ①법인46012-245, 2000. 1. 25. ②국심2007중0005, 2007. 7. 30.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②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인바, 쟁점배상금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Text (과세방안 재검토) 채권의 존부, 손해액의 확정, 회수가능성 등을 Text 고려하여 과세방안 재검토

Text - 법인세법 기본통칙 상 손해배상채권 확정의 취지를 확인하여 과세논리 Text 보강, 불복 없이 과세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 확보 노력

#### Text 나. 조사팀 과세논리

Text (건리확정요건)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권리의무 확정 Text 주의에 따라 민·형사 소송 완료 전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과세 가능

####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Text - 이 때 '확정된 날'이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은 수취할**Text 권리가 확정된 날, 손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을 뜻함

Text - 권리의 확정 요건은 ① 특정한 채권이 성립, ② 해당 채권에 근거 Text 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 발생, ③ 채권의 금액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함

Text < 최선집변호사 법률교실 법률상담사례(24.5.23.) >

**Table** 

- 손해배상 귀속시기에 대한 개념은 해외의 'disputed income'의 개념을 국내 세법에 도입한 것으로, 당초 배상범위 자체가 법률쟁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 최종 판결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므로 이 시기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 제정 취지임
- 이에 따라 조사법인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①당초 수취하였어야하는 수수료, ②실제 수취한 수수료, ③수수료를 수취하였어야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회사측과 이견이 없는 경우 해당 시점이 손익 귀속시기에 해당
- ⇒ 즉, 손해배상소송의 판결로 손해액 등의 변동 가능성 여부가 중요

Text ( **소사팀 과세논리**)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서 Text 범위 등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 귀속시기에 해당

Text - 하지만, 이미 확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청구의 절차적 수단으로

Text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해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에 해당함

#### Text 다. 과세증빙 확보

Text ( **(최대주주 변경)** 조사기간 중 최대주주 변경, 전 사주관련 임원에 Text 관한 사건으로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자료제출 거부

Text - 조사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사항을 재차 고지하고 설득

Text (의도적으로 관리) 직전 조사팀 및 현장(밀알)정보를 통해 조사법인이 Text 의도적으로 자료를 지연 제출한다는 정보를 접하여 조사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 일자별 요구자료 내역을 전산 관리하였으며,

요청일	분류	પાલ	진행상황	제출일	제출0
		R&D 세액공제 관련 프로젝트별 비용 배분 내역(위탁 R&D 포함)			
2024-12-03	R&D	- core/app 구분, 인건비/재료비 등 구분			현업 요
		- 자산화된 개발비와의 연관성 설명 요청			
2024 42 02	00.0	R&D 세액공제 대상비용 취합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요청			#101.0
2024-12-03	R&D	(전체 비용 code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			현업도
2024-12-03	R&D	R&D 세액공제 대상비용(인건비) 상 산재보험 포함 여부 확인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대			현업 외
2024-12-03	KOLD	사 요청)			연합 1
2024-12-04	매출	회사 매출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요청 (상품매출, 제품매출, 용역매출 등)			현업 외
2024-12-04	수입금액	수입금액 조정 관련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금액 backdata			현업 외
2024-12-05	위탁연구개발비	해외연구소 연구개발 위탁(이전가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연구소 인원 인터뷰 arrange 요청	제출	2024-12-03	
2024-12-05	해외인건비	해외현지법인 주재원 급여 보전 여부 확인 및 퇴직연금, 4대보험 포함 여부 확인	제출	2024-12-10	
2024-12-05	이행보증	해외현지법인 이행보증 계약서 제출 및 수취 여부 확인	제출	2024-12-10	
2024-12-06	매출채권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 존재 여부 및 지연이자 계산 내역 존재 여부 확인	일부제출	2024-12-13	
2024-12-06	해외현지법인	해외현지법인 소개자료 준비 및 제출 (별도 한글파일 요청자료 수령)			현업요
2024-12-06	해외현지법인	해외현지법인 소개자료 관련, 네덜란드 현지법인 소개자료 우선 준비			현업 요
2024-12-09	APA	APA 진행 현황 확인 (별도 정리자료 제출) : 태국, 네덜란드, 미국, 인도, 캐나다, 중국, 멕시코	제출	2024-12-03	
2024-12-09	APA	네덜란드 관련 17년 말 체결된 APA 내용에 대해 내용 확인 및 인터뷰 요청 (회사 및 자문사)			현업의
2024-12-10	기조사	이전 조사 적출내역 반영 여부 확인 (세무조정 등 반영 여부 확인)	제출	2024-12-05	
2024-12-10	이전가격	이전가격 분석 관련 벤치마크 raw data 제출	제출	2024-12-04	
		이전가격 전반 및 사용료 수취/지급에 대한 설명을 위한 회사 담당자 인터뷰 arrange			
2024-12-10	이전가격	- 가능하면 이번주 중 진행	제출	2024-12-05	
		- (인터뷰 시, 또는 인터뷰 이후) 로열티 계산내역 및 계약서			

Text O (자료제출 공문) 실제 조사진행 중 수차례 자료를 지연 제출하여

Text 자료제출 공문을 발송, 법령 상 과태료 부과 및 조사기간 연장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과세증빙 확보에 최선을 다함

able	국세청	지방국세청 <sup>국세청</sup>								
	수신자 (주) 제목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부·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세 자	상 호 (성 명)	(주)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자료제출기한 2025. 02. 28.(금)									
		,	자료 제출	요구 명세						

Text (과세증병 확보) '손해액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Text 수차례의 법무팀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고소장·감정평가서·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부 보고문서 등을 수집하여 과세증빙 확보

#### Text 다. 적출항목 관련 세무조정

Text ○ (익금산입) 감정평가자료 등 확정된 손해액을 익금산입 후 사외유출 처분
Text 해야하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보 처분

Table 관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494, 2020. 9. 17.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이어서 대표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표자 등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이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대표자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횡령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Text (고세논리 입증·수용) 조사팀의 과세논리와 법률자문 사례를 근거로 Text 자세논리를 설명하여 납세자가 과세쟁점 수용, 불복 없이 전액 현금 납부

Special

적출[2]

# ❖ 기타 국조법 관련 과세 (항목코드: 18106)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

####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결산보고서 매출채권명세서 상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채권 잔액이 비 Text 특수관계 거래처에 비해 조사대상기간 내내 고액으로 확인되어

Text -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인 해외현지법인에게 Text 기간의 이익을 분여했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집중 조사

#### Text < 결산보고서 상 매출채권명세서 잔액 >

Table				4. 매 출	채 권 명 세	서		
								(단위 : 원)
	거	래	선		급	얜	비	고
						386,659,753,509		
						185,793,943,160		
						137,011,887,681		
						80,269,750,747		
						68,787,738,941		
		]				23,054,956,803		
						12,598,836,382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 Table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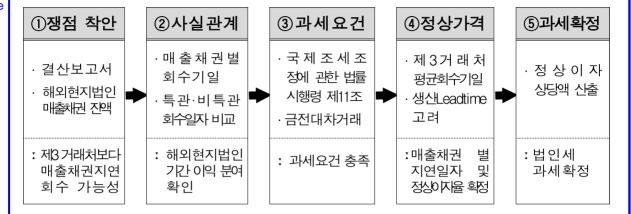
#### Table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 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쟁점 발굴 및 검토 흐름 요약)

Table



Text ○ (매출채권 지연회수 과세요건)

Table

-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 상당액 과세요건
  - 1.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 「국조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 2. 정상가격 적용 대상거래
    - ·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로서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적용 대상

Text - (특수관계) 조사법인은 미국 등 46개 현지법인의 지분 100% 보유,

Tex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특수관계 성립

Text - (금전대차거래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Text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는 통상적인 회수
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

Text (①국외특관자 채권 회수기일)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ERP 상 매출채권 Text 관리대장의 신뢰성 확보하여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별 회수기일 산정

Text (②**세3자 평균회수기일**) 해외현지법인 매출규모와 유사한 제3자 Text 거래처를 선별하여 대륙별 제3자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 산정

#### Text < 대륙 별 평균회수기일 산정 >

(일)

Table	대륙	제3자평균회수기일 (①)	생산Leadtime (②)	평균회수기일 (①+②)
	아메리카	51	27	78
	아시아	64	11	75
	유럽 및 아프리카	36	25	61

Text O (③현지법인 특성 고려) 해외현지법인은 조사법인으로부터 반제품 매입,
Text 기공 후 완제품을 생산하므로 생산Leadtime을 제3자 평균회수기일에 가산

# Text < 대륙별 생산Leadtime 산정 >

1									
Table				Delivery period of I	HQ's CKD to	affiliates			Customer normal collection period for delivering finished goods ~ AR cash collection from Customers
		① Origin L/T (Cargo Pickup Date to POL ATD)	② Port to Port (POL ATD to POD ATA)	③ Destination Inland L/T (POD ATA to Final dest. ATA)	4 Total L/T (POL ETD to Door) (2 + 3)	Door)	Service Re- Routing Risk (Suez, Cape of Good Hope, War, Panama)	Total	The normal collection period required to retrieve AR after delivering products to customers
	1	4	2	3	5	9		9	150 (60 AR collection + 90 money order to cash)
	2	3	3	3	6	9		9	103
	3	7	21	Consignee scope	21	28		28	35
	4	5	3	not used	3	8		8	Items will be collected 30 days after delivery
	5	7	40	12	52	59	21	80	For HMG, it is 25th of the following month
	6	7	35	3	38	45	21	66	Average 35 - 40 days after invoice date
	7	7	36	12	48	55	21	76	For HMG, it is 25th of the following month
	8	7	19	12	31	38		38	44
		7	34	2	36	43	+ The days from berthing delay to gate out on POL	43 + The Days	44
	9	7	26	22	48	55		55	66
	10	6	40	7	47	53	21	74	60

Text ○ (④정상이자율 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Text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확정

Text ○ (⑤지연회수 정상이자 산출) 제3자 평균회수일보다 지연회수한 해외현지 Text 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지연회수일자에 대한 정상이자 상당액 산출

# Text < 해외현지법인 별 지연회수 정상이자 상당액 >

ble	법인명	2021	2022	2023	합계
	Alabama			5,134,851,377	5,134,851,377
	BRASIL	72,347,850	123,722,008	161,446,087	357,515,946
	CSM		89,384,930	1,254,282,970	1,343,667,900
	Deutschland GmbH			338,235,468	338,235,468
	Nanchang	9,198,178	5,681,599	8,237,305	23,117,082
	Netherlands	57,708,168	161,710,467	453,742,799	673,161,435
	Slovakia s.r.o.		114,748,134	1,534,740,041	1,649,488,176
	South Africa	4,312,878	30,767,407	46,192,293	81,272,579
	Thailand		29,782,524		29,782,524
	USA	11,860,947	151,357,572	459,521,711	622,740,230
	YANCHENG	34,399,216	17,541,864	2,717,343	54,658,423

#### Text 나. 납세자 주장 및 과세논리

Text (남세자 주장) COVID-19 사태 이후 경기침체 여파로 매출감소, 원재료 Text 가격이 상승되었고 이로인해 해외현지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출채권을 조기 회수하지 못한 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Text ( **소사팀 주장**)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달리 국조법 상 Text 정상가격 과세요건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한 정상이자 상당액은 국외특수관계자 이익 분여에 해당함

Table 판례 조심-2016-중-2322(2017. 1. 2.)

국외 비특수관계사로부터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도출(최장 60일)한 후 가장 원거리인 OOO현지법인에 대한 선적 운항일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30일을 추가 가산한 최종 90일을 기준 회수일로 하여 매출채권 지연회수일수를 산정함으로써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시의 비교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는 달리 국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Text 다. 적출항목 관련 세무조정

Text (정상가격 익금산입) 국외특관자 간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국제조세

Text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므로
지연일에 해당하는 정상이자액 익금산입 임시유보 처분

Text (과세논리 입증·수용) 다수의 판례와 생산Leadtime 반영한 합리적 회수기일

Text 산정 등 국조법을 근거로 과세논리를 설명하여 납세자가 과세쟁점 수용,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 납기 내 현금 납부

#### Text 라.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Text 이 해외현지법인 간 거래 계약서 요청하였으나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고 회신,

Text 약정된 회수기일을 파악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당자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 ERP 상 매출채권 관리대장 확보하여 업체별 기본
셋팅값이 회수기일임을 파악하고 지연회수일 산정

Special

적출3

# ❖ 기타 국조법 관련 과세 (항목코드: 18106) 해외현지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 Text **1. 조사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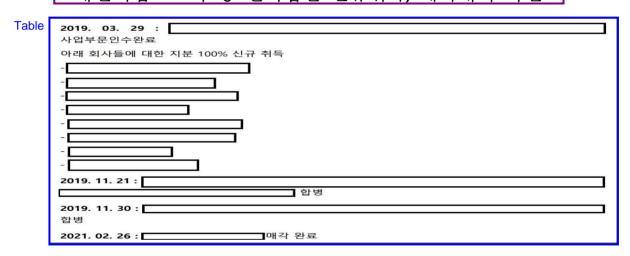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O 조사법인이 보유한 46개 해외현지법인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을 Text 회신받아 조사법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현지법인 중 사용료 미수취 법인 추출

Text - 개별기업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

Text 대상기간 내 해외현지법인 지분 신규취득, 지분매각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Text < 개별기업보고서 상 현지법인 신규취득, 매각내역 확인 >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조사법인의 시장 위치) 조사법인은 Global 자동차용 공조제품 시장 Text 점유율 Top3 내에 위치,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Text - 조사법인은 284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계열사에 Text 상표권 사용권을 허여하고 있음

### Text < 조사법인 무형자산 등록 현황 >

able			무	형자산 등록 현황	
	분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건수	8,111	135	284	8,530

Text ( (무형자산 가치) 제품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에 의존

Text 하는 여타 산업과는 달리,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 관련

Text 무형자산은 주요 고객인 완성차 업계에서의 기술 및 품질 측면에서의

Text 인지도, 기존 고객과의 관계에 <u>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u>

Text ○ **(현지법인)** 현지법인은 이러한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중요한 마케팅

Text 관련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법인의 무형자산에 의존하고

Text 있음을 수차례 담당자 인터뷰 및 개별기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함

Text 🔘 (신규취득, 매각) 현지법인 중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2개 법인은

Text 19년 취득, 매각예정 보유 후 '21년 매각한 법인과 '21년 신규취득 법인으로 확인

Text ○ (정상가격 산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상표권 사용료를

Text 수취하는 현지법인의 수수료율(매출액의 0.3%)을 적용하여 사용료 미수취 산정

#### Text 나. 명확한 과세근거 확보 및 처분 유지

# Text < 상표권 사용료 계약서 중 일부 발췌 >

rable	TRADEMARK LICENSE AGREEMENT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by and between, a Korean corporation with offices at 95, Sinilseo-ro, Daedeok-gu Daejeon, Republic of Korea, and, and, a Korean corporation with offices at 20, Asanvalleyseo-ro, Dunpo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LICENSEE").
	WHEREAS, is the sole and exclusive owner of the trademark in various forms, including the registrations identified more fully in Schedule A attached hereto (the "Trademarks"); and
	WHEREAS,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grant to LICENSEE the right, privilege and license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goods and/or services covered by the registrations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LICENSEE has represented that it has the ability to manufacture, market and distribute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identified in Schedule A attached hereto (the "Territory") and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and
Text (	<b>확인서 작성)</b>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미수취한 2개 법인은 조사법인의
Text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 제품에 상표 부착, 상표권의 가치를
Text	공유하는 것을 확인, 대표이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증빙 확보
Text 다.	적출항목 관련 세무조정
Text	( <b>익금산입)</b>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현지법인의 수수료율
Text	(0.3%)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억원 익금산입, 임시유보 처분함
Text (	( <b>과세논리 입중·수용)</b> 확보한 과세증빙과 과세논리를 설명하여 납세자가
Text	사용료 미수취하 사식을 시인하였으며 북보 없이 낫기 내 혀금 낫부

Special

적출4

# ❖ 공동경비 분담금액 초과 (항목코드: 11203) 해외현지법인 공동경비 청구 누락

#### Text **1. 조사착안**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이 예비조사 진행 중 고액의 외환송금 건이 다수 확인되어 orbis, 인터넷 포털 Text 등을 통해 외환수취 거래처가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이라는 것을 인지함

Text - 컨설팅용역 결과물의 수혜자가 조사법인 뿐만 아니라 46개 해외현지법인도

Text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동경비 안분 적정 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

#### Text < 외환수취송금자료 >

Table

	외	환수취송금자 <u>.</u>	Ē				
송금수취년윌	외환원천구분	송금수취구분	송금수취사유	송금자명	수취자명	송금수취국가	거래금액(원)
202301	해외송금수취	송금	컨설팅서비스			싱가포르	1,588,776,100
202307	해외송금수취	송금	컨 <mark>설팅서</mark> 비스			싱가 <mark>포</mark> 르	3,344,679,000
202310	해외송금수취	송금	컨설팅서비스			싱가포르	3,171,090,000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사용횟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기준보보) 컨설팅 수혜자를 특정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서 및 용역 Text (결과물을 회신받았으며, 영문으로 작성된 다량의 문건을 일일이 번역하고 자동차부품 전문 용어를 검색하여 문건의 내용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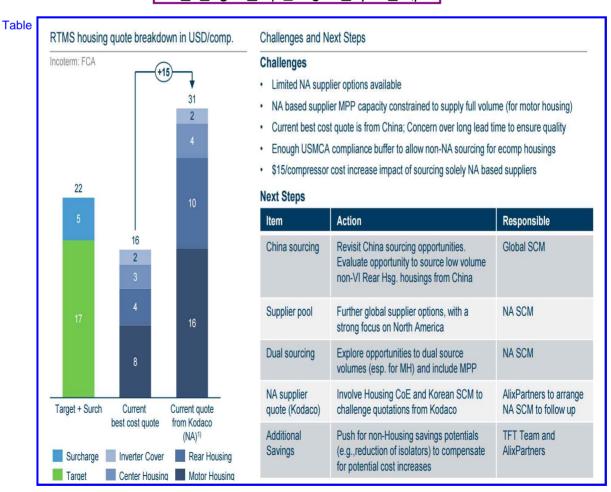
Text (공동경비) 총 2차례 컨설팅은 조사법인과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11개 Text 해외현지법인이 공동 진행하였고 비용은 조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됨

Text - (Gen5(컨설팅1)) 부품가격 경쟁력 검토 및 대체품 물색, 원자재 Surcharge Text 관련 고객사로부터 Recovery 추진 등 전략수립 Consulting

Text - (RTMS(컨설팅2)) USMCA 규정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공급사 발굴 및

Text 공급사 현지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 추진 Consulting

#### Text < 컨설팅 결과물 중 일부 발췌 >



Text (공동경비 안분) 조사법인과 11개 해외현지법인의 공동경비를 안분하기 위해 Text 경영자문료 등 내부 비용배부 기준인 MSF를 적용하여 안분금액 산출

#### Text < 공동경비 안분 기준 MSF 적용 >

Table

FG/PG	Description of Function	Chargeable Activity (O,X)	Activity (%)
			Activity
글로벌 구매정책 기획	1. 글로벌 구매 정책(비전, 전략) 수립 및 공유 2. 글로벌 구매 목표(KPI) 수립 및 실적 취합 관리	0	10%
글로벌 구매조직 운영방안 수립	1. 글로벌 구매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 및 현황 관리 2. 글로벌 구매 인원의 Reporting line 수립 및 변화관리	0	15%
글로벌 협력사 Risk 관리	1. 글로벌 협력사 FHA (Financial Health Assessment) 주관         2. 글로벌 협력사 분쟁광물 사용여부 조사 지원         3. 글로벌 Carbon neutral 관련 현황조사 및 분석         4. 한국 협력사 재무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리스크 관리	0	20%

### Text 나. 적출항목 관련 세무조정

Text (이 (이금산입) 조사법인은 세무조사 착수 후 공동경비 청구 누락한 사실을 Text 알고 '23년 해외현지법인에게 청구 누락한 금액을 '24년 말 채권 인식

Text - 공동비용 청구 누락 ○○억원 익금산입 유보 처분함